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51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김남근 · 송재봉 · 민병덕
강준현 · 이훈기 · 이용우
박 정 · 진성준 · 박정현
김 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허위·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하나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비자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을 지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건에서는 사업자가 책임 인정과 피해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허위·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다수 소비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에서도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와 위법행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일정 기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활동을 수행해 온 소비자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가 간소화된 채권신고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증거를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 인정과 피해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업자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대부분 사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소비자집단소송은 이 법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책임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안 제2장 및 제3장).
- 다. 책임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안 제2조).
- 라.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안 제3조).
- 마. 책임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책임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안 제3조).

바. 책임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사.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책임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안 제4조).

아. 책임확인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수, 쟁점의 공통성, 책임확인소송이 피해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여부,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적절하고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책임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자. 원고단체는 책임의 존부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원고단체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책임의 존부에 관한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안 제7조).

차. 책임확인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그 채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카.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타.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그 채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10조).

파. 피고의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그 채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하.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2조).

거. 책임확인 청구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책임확인 청구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너.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각 피해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확인 청구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더.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러. 책임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안 제19조, 제21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며. 당사자 및 신고소비자는 채권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 내에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함(안 제30조).

버. 원고단체는 책임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2조).

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4. “소비자집단소송”이란 이 법에 따른 책임확인소송, 채권확정절차를 말한다.
5. “책임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

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6. “채권확정절차”란 책임확인소송의 결과를 전제로 법원에 대한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자에게 갖는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책임확인소송

제3조(책임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등) ① 책임확인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책임확인소송의 원고(이하 “원고단체”라 한다)로서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같은 법 제7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소비자기본법」 제70조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것

나.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할 것

② 책임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인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불법행위(「민법」, 그 밖의 법률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책임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인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나 그 채무의 이행을 하는 사업자, 그 밖에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① 책임확인소송은 피고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책임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한다.

④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책임확인소송이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한다. 다만, 그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책임확인소송의 전부를 다른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책임확인소송의 원고단체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제기 등) ① 책임확인소송의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단체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추정되는 피해자의 범위 및 전체 피해액
4. 청구의 취지 및 원인

② 책임확인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③ 원고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장에 그 단체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피해자의 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피해자에게 공통되었는지 여부, 책임확인소송이 피해자의 권리실효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여부,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적절하고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출명령) ① 원고단체가 책임의 존부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출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그 정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정보를 원고단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원고단체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책임의 존부에 관한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정보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책임확인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의 존부의 증명 또는 채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직권 또는 원고단체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피고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피고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피고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실조사의 필요성에 비하여 피고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원고단체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⑥ 법원은 조사를 받은 피고에게 제5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피고는 조사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할 사람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피고 혹은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에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신청한 원고단체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을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인이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그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단체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피고 또는 그 직원은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9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피고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피고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고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원고단체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원고단체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기간·비용,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9조(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피고가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피고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

을 예견하고, 그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이하 “법률자문서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률자문서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법률자문서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피고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전문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피고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책임확인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래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의 존부의 증명 또는 채무액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또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책임확인소송에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신청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신청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안에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책임확인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⑫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11조(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책임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피고의 책임의 존부의 증명 또는 채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제9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방법·장소 및 변호사 선임여부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신문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 및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 후,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원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경과요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상녹화물(녹음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

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제1항의 신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⑮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문

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하게 하는 등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제11조제1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소송절차) 책임확인소송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0조(직권증거조사),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3조(증거보전),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제1항·제4항 및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성원”은 “피해자”로, “대표당사자”는 “원고단체”로 본다.

제14조(확정판결의 효력) ① 책임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소비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책임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단체는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단체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15조(특별지급판결 등) ① 법원은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각 피해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참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책임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때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1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법행위의 기간·횟수 등
6. 피고의 재산상태

7. 피고가 피해자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거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 법원은 책임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원고단체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장 채권확정절차

제16조(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 ① 책임확인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단체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청구의 인낙이나 책임의 준부에 대한 화해로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소송의 제1심 종국판결을 한 지방법원(제1심에서 청구인낙이나 화해로 해당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해당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지방법원을 말한다)에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확정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권확정절차 개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원고단체(이하 “채권확정절차단체”라 한다)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제1항의 법원(이하 “채권확정절차

법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고, 통지, 송달, 그 밖에 필요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④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은 채권확정절차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취하할 수 없다.

제17조(임의적 구두변론) ① 채권확정절차에 관한 재판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확정절차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8조(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 ①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범위를 기재한 결정서로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피해자의 범위, 사안의 복잡성, 채권확정절차단체의 규모와 인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 및 그 채권신고에 대하여 채권확정절차의 피고가 인부(認否)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인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채권확정절차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나 직권으로 채권신고기간 또는 인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관보에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채권확정절차 개시결정의 주문
2. 신고 대상인 피해자 및 채권의 종류
3. 채권확정절차단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4. 채권확정절차의 개요(채권확정절차단체에 대한 채권신고의 수권 절차를 포함한다)
5. 채권신고기간 및 인부기간

⑥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단체 및 피고에게 제5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신고의 수권절차의 개시 등) ① 채권확정절차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추정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 채권신고의 수권(授權)절차를 개시한다.

1. 책임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의 내용(청구인낙이나 화해로 해당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안의 내용
2. 채권확정절차의 개요(채권확정절차단체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아울러 채권확정절차를 수행하려면 피해자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한다)
3. 신고 대상인 피해자 및 채권의 종류

4. 채권확정절차단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5. 신고 대상인 피해자가 채권확정절차단체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수권을 하는 방법(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그 제출방법을 포함한다) 및 기간
 6. 피해자가 신고대상인 채권에 기하여 사업자에게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채권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
 7. 채권확정절차단체가 보수나 비용을 받는 경우 그 액수 및 산정방법
 8.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 화해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지급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피고는 채권신고기간 중에 채권확정절차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확보하고 있는 신고 대상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를 지체 없이 채권확정절차단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공평성실의무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권을 받은 채권확정절차단체는 해당 수권을 한 피해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절차(해당 수권과 관련된 채권에 관한 재판 외의 화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고 이들에 수반하여 취득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확정절차단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권계약(피해자로부터 수권을 받고 채권신고를 포함한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의 절차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③ 채권확정절차단체에 수권을 한 피해자는 수권을 철회하거나 수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채권신고기간 이후에는 제22조에 따라 채권확정절차단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는 수권의 철회나 내용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1조(채권신고) ①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확정절차단체, 피고 및 채권확정절차단체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권신고의 수권을 한 피해자(이하 “신고소비자”라 한다)
2. 신고소비자의 채권액 및 청구원인(청구원인은 책임확인소송에서 인정된 책임에 관련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을 전제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책임확인소송에서 제15조제3항의 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제2항제2호의 신고소비자의 채권액을 기재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채권확정절차단체는 피해자가 신고대상인 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게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고대상인 채권에 관한 채권신고를 할 수 없다.

제22조(채권신고의 취소 및 내용변경 등) ① 채권신고는 채권확정절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채권확정절차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소비자를 추가할 수 있다.

제23조(부적법한 채권신고의 각하) ①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채권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4조(시효의 중단) 채권신고가 있는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는 채권확정절차의 전제가 되는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5조(채권신고서의 송달)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제21조에 따른 채권신고서의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채권신고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소비자표의 작성) ① 채권확정절차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채권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채권(이하 “신고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소비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소비자표에는 각 신고채권의 내용 및 그 밖에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소비자표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신고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기재를 경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채권의 인부) ① 피고는 신고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인부기간 내에 인부를 하여야 한다.

② 인부기간 내에 제1항의 인부가 없을 때에는 피고가 신고채권의 내용의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 피고가 인부기간 내에 신고채권의 내용의 전부를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신고채권의 내용은 확정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신고채권의 인부의 내용을 신고소비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신고채권에 대한 신고소비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8조(채권확정재판의 신청) ①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채권의 내용이 확정된 때를 제외하고, 신고채권의 인부에 대하여 인부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신고채권을 확정하는 재판(이하 “채권확정재판”이라 한다)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재판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의 유무를 신고소비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적법한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신고채권의 내용은 신고채권의 인부의 내용에 의하여 확정된다.

⑥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신고채권에 대한 신고소비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9조(채권확정결정) ①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적법한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의 존부 및 그 채권액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채권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정절차단체 및 피고 쌍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채권확정결정을 위한 심리에서 증거조사는 서증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채권확정절차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권확정결정은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신고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채권확정결정의 경우 채권확정절차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채권확정결정의 효력은 제4항의 결정서가 채권확정절차단체 및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⑦ 채권확정결정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적법한 이의의 소 제기가 없는 경우 채권확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0조(채권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채권확정절차단체, 피고 및 신고소비자는 제29조제6항에 따라 채권확정절차단체 및 피고가 채권확정결정의 송달을 받은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해당 결정을 한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1항의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고소비자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소비자는 채권신고를 한 해당 채권확정절차단체에 한정하여 수권을 할 수 있다.

③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제1항의 이의의 소제기가 부적법한 때 또는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채권의 확정을 지연시키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제3항에 의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31조(소 변경의 제한 등) ① 채권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소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원고가 되는 경우 신고소비자 또는 청구액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소의 변

경을 할 수 있고, 신고소비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액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소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대하여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32조(원고단체 등의 가압류) ①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책임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그 단체가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에 관련된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서는 보전하여야 할 권리와 관련하여 추정되는 피해자의 수 및 전체 피해액을 밝히면 충분하다.

③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3자와 체결한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에 관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화해)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소비자집단소송의 각 절차에서 책임의 존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 지급방법,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와 화해할 수 있다.

제34조(소송수계)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책임확인소송,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의 절차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단체 중 법원에서 허가하는 단체가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제35조(소송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민사소송법」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5장 벌칙

제38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5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 ① 피고 또는 그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피고의 경우: 1억원 이하

2. 피고의 직원(임원·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확인소송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되는 책임확인소송부터 적용한다.